

투 자 설 명 서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 3

이 투자설명서는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 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 3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 3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국민은행 (대표전화 317-2114)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
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8년 6월 20일
5. 투 자 설 명 서 비 치
·공시 및 인터넷 게시주
소 판매회사 본지점,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www.franklintempleton.co.kr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목 차

[핵심투자설명서]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3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국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 추구.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 투자철학인 "Bottom-up" 방식에 의거,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 **7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음.
-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하면서 내재가치가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 오성식(CIO), 김태홍(이사)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08년 5월 9일 현재)

기간	최근 1년 2007-05-10 ~ 2008-05-09	최근 2년 2006-05-10 ~ 2008-05-09	최근 3년 2005-05-10 ~ 2008-05-09	최근 5년 2003-05-10 ~ 2008-05-09	설정일 이후 2002-01-15 ~ 2008-05-09
투자신탁	21.36	14.65	25.97	22.62	18.72
비교지수	14.45	12.13	24.93	24.12	15.87

* 비교지수: KOSPI100%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환매수수료	90 일 이내: 이익금의 70% 90 일 이상: 없음	환매시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65%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785%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기타비용 ¹⁾	순자산총액의 연 0.04%		
총보수 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6% + 기타비용		

1) 기타비용은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7년 5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3. **매입·환매절차등 :**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 오후 시)중 매입·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직위 _____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3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5. 최초설정일
2002년 1월 15일
6. 수탁고 추이

(2008년 5월 9일 현재 기준, 억원)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 6개월전	2년전	2년 6개월전	3년전
	2008-05-09	2007-11-09	2007-05-09	2006-11-09	2006-05-09	2005-11-09	2005-05-09
수탁고금액	1,220.89	1,617.89	1,494.72	1,575.31	1,585.07	1,465.62	1,129.54
수탁고증가율	-24.54	8.24	-5.12	-0.62	8.15	29.75	0.00

7. 해지사유

- 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나. 가의 (3)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다. 가의 (2)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산운용회사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약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60 여년 간의 운용역사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 받아 온 존 템플턴 경의 가치투자 철학에 근간을 두고 "Bottom-up"방식에 의거한 종목 선별을 통해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여 고객의 자산증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 간접투자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운용합니다.

- 60 여년 간의 운용역사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 받아 온 존 템플턴경의 투자철학인 "Bottom-up"방식에 의거하여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래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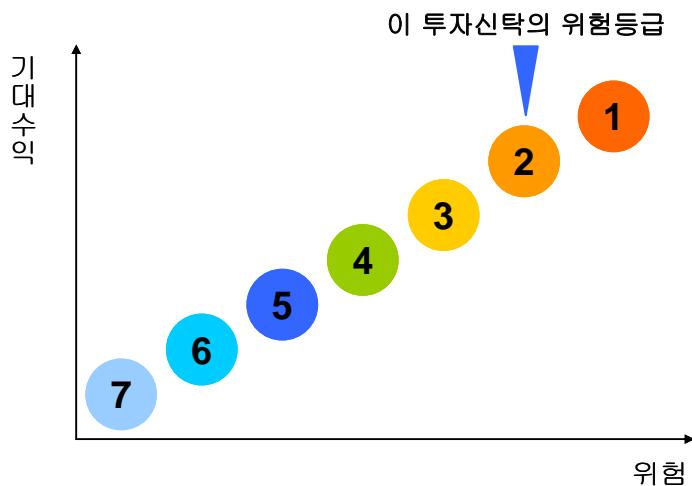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위험에 따른 위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내재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약관상 국내상장 주식의 편입 비율이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 허용되어 있어 위험의 **7 등급중 2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은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내재가치가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 1등급: 매우높음
- 2등급: 높음
- 3등급: 비교적 높음
- 4등급: 중간
- 5등급: 비교적 낮음
- 6등급: 낮음
- 7등급: 매우낮음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운용회사(www.franklintempleton.co.kr)·판매회사("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중 "II. 판매회사" 참조)·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오성식	CIO	한국투신운용(1989-1996) 삼성투신운용 (1996-1999) 리젠트자산운용 (1999-2001) 당사 주식운용담당이사 (2002-현재)
김태홍	부장	미래에셋투신운용(2003-2007) 당사 주식운용팀(2007-현재)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전문인력으로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2007-05-10 ~ 2008-05-09	2006-05-10 ~ 2007-05-09	2005-05-10 ~ 2006-05-09	2004-05-10 ~ 2005-05-09	2003-05-10 ~ 2004-05-09	2002-05-10 ~ 2003-05-09	2002-01-15 ~ 2002-05-09
투자신탁	21.36	8.30	52.07	2.93	34.72	-19.44	0.00
비교지수	14.45	9.86	55.09	11.50	35.48	-26.1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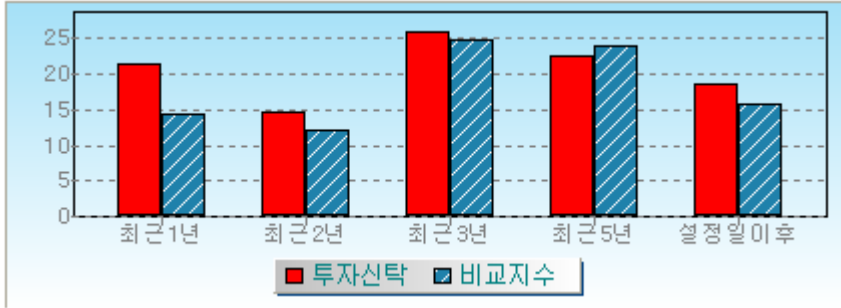
* 비교지수: KOSPI100%



나.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7-05-10 ~ 2008-05-09	2006-05-10 ~ 2008-05-09	2005-05-10 ~ 2008-05-09	2003-05-10 ~ 2008-05-09	2002-01-15 ~ 2008-05-09
투자신탁	21.36	14.65	25.97	22.62	18.72
비교지수	14.45	12.13	24.93	24.12	15.87

* 비교지수 = KOSPI 100%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90 일 이내 : 이익금의 70%	환매시
	90 일 이상: 없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65%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785%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4%	
	총보수 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6% +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동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아래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기타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276,584	871,930	1,528,299	3,478,840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가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펀드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 구분	고객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이자, 배당소득	과세표준의 15.4%	과세표준의 14%	과세표준의 0%

※ 개인은 주민세가 포함되어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2)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한 경우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가.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2)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주1)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한 경우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수수료

90 일 이내: 이익금의 70%

90 일 이상: 없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가. 이익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나.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1)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 제44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등

1. 투자전략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60 여년 간의 운용역사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 받아 온 존 템플턴경의 투자철학인 "Bottom-up" 방식에 의거하여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래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2. 투자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동 상품은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등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탁자산은 수탁 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	-------------------	-----------------

1.	주식	60%이상	-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 공모주
2.	채권	35%이하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 (신용등급 : BBB- 이상, 사모사채권 제외)
3.	어음	35%이하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 기업어음(신용등급 : A3-이상)
4.	자산유동화증권	10%이하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5% 이하 (보유 채권·채무증서 총액대비)	
6.	수익증권등에의 투자	5% 이하 단, ETF는 30%까지 투자 가능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7.	투자증권의 대외	5% 이하 (보유 투자증권총액 대비)	
8.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 (주식관련파생상품)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 (채권관련파생상품) CD 금리 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9.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10.	투자증권의 차입	20% 이하	
11.	유동성 자산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 상품에 한한다) : 수탁회사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투자비율 적용의 예외	위 투자대상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투자대상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 세부설명 및 투자한도, 유예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본문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p>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계열회사 주식투자	<p>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후순위채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투자한도 초과	<p>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 37 조 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10 호, 약관 제 38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II.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이후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의 사유 및 절차

- (1)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2) (1)의 사항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①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③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5)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②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6)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①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②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1), (5) 및 (6)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

에 응할 수 있다.

- (2) 위 (1)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위(2)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위(3)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 (5) 자산운용회사가 부분 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상환금등의 지급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 (1)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 빌딩 3층 ☎ (02) 3774-0600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3월: 쌍용투자자문회사 설립 - 1997년 2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과의 합자로 쌍용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7년2월: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1999년 3월: 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00년 7월: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이 회사지분전부인수로 100% 외국계 투신운용사가 됨 - 2000년 9월: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 주요업무

가.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나. 업무의 위탁

- (1)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SC제일펀드서비스에 위탁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 164 조에서 정하는 업무중 기준가격산정업무를 SC 제일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의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 (2) 매매주문체결업무의 위탁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매매주문체결업무와 관련하여 계열사인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TAML")의 지원을 받습니다. TAML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싱가포르 금융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으로 부터 자산운용업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다. 의무 및 책임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2006.3.31	2007.3.31	항목	2006.3.31	2007.3.31
유동자산	36,063	40,388	영업수익	15,833	19,193
고정자산	4,513	3,811	영업비용	11,315	15,057
자산총계	40,575	44,199	영업이익	4,518	4,136
유동부채	3,551	4,068	영업외수익	213	298
고정부채	-	-	영업외비용	78	32
부채총계	3,551	4,068	경상이익	4,654	4,402
자본금	15,000	1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2,025	25,131	특별손실	-	-
자본총계	37,025	44,199	당기순이익	3,328	3,107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5월 9일 현재 기준, 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회사형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17,738.68	1,479.82	4,920.82	0.77				1,210		25,350

*투자일임재산을 제외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07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억원)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동투자신탁 제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오성식	1963년생	CIO	67개	30,600	한국투신운용(1989-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리젠트자산운용(1999-2001) 당사 주식운용담당이사(2002-현재)	탐공동운용
김태홍	1970년생	부장	67개	30,600	미래에셋투신운용(2003-2007) 당사 주식운용팀(2007-현재)	탐공동운용

*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투자일임자산을 포함합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연혁(설립일)
국민은행	02-317-21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2001년 11월 1일

2. 주요업무

- 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 나.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업무
- 다. 간접투자증권의 교부 업무
- 라.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업무
- 마.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관련 업무
- 바. 대고객 상담 및 약관, 투자설명서 교부 등 부수업무 및 그 외 판매행위준칙 등에 해당하는 내용

(판매행위준칙 등)

- (1)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②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 ③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④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⑤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2)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6)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의무 및 책임

- 가.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 02-317-2114)
회사연혁	www.kbstar.com

2. 주요업무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간접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업무위탁

해당사항없음

4. 의무 및 책임

- 가.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SC 제일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번지 굿모닝 타워 19 층, (우)150-712 (대표전화 02-3770-4450)
회사연혁	1999년 11월 3일 설립 2000년 1월 2일 등록

2. 주요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4. 의무 및 책임

- 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신용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대표전화 7872-200)
회사연혁	1998년 8월 20일 설립 1998년 8월 20일 등록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21 광화문빌딩 9층 (대표전화 399-3350)
회사연혁	2000년 5월 29일 설립 2000년 7월 1일 등록

2. 주요업무내용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

VI.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수익자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 총회의 소집절차

-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 (2)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3) (2)의 사항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4)의 사항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6)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자 총회의 운영

- (1)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라.의 (1)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라.의 (2)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의결권등

- (1)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4)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

자총회의 회일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5) 자산운용회사는 나.의 사항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바. 수익자총회의 연기

-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2) 바.의 (1)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아래 (3)의 사항들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사.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투자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위의 (1)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아. 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 74 조에 따른다.

자. 수익자명부 관리방법

-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투자신탁약관·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3)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증권예탁결제원은 (4)의 사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②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2. 잔여재산분배

- 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라.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마.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가.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 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증권매매거래내역서입니다.

4. 손해배상책임

- 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나.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가.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

- 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이 상품의 투자신탁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http://www.amak.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가. 정기공시

- (1) 경영에 관한 보고: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경영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부터 4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약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부터 신탁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및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신탁약관을 비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신탁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이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 (4) 운용실적의 공시: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매입자산유형 등으로 구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영업보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2)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기준가격계산서
 - ④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3)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자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4)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2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수탁회사보고서

- (1)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2)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가.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1)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2)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 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 (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등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공시사항

- (1)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④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⑤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⑦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다. 의결권 행사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 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 일 전까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Templeton Growth 주식투자신탁 3

판매 일 :

투자자 확인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 (그 주요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